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고명진 소유물건(2025타경51570)

의뢰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동혁

감정평가서번호: W12506260002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우일감정평가사사무소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손영국

감정평가액	사억칠천오백만원정 (₩475,000,000.-)					
의뢰인	서울서부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조동혁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7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고명진 (2025타경51570)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07.07	2025.06.30 ~ 2025.07.07	2025.07.08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구분건물	1개호	구분건물	1개호	-	475,000,000
		이	하	여	백	
	합계				₩475,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정원여자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흥은드림아파트 제2층 제202호로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강제경매를 위한 감정평가 건임.

2. 감정평가의 근거

본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관계법령의 규정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감정평가이론 및 기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3.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 방법

가. 기준가치

본건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의거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나,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본건은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시장가치 기준)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감정평가 방법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토지의 소유권 대지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것이 원칙임.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시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시산가액을 산정하는 주된 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 목적, 대상부동산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방식(원가법, 수익환원법)에 의한 시산가액간의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함.

원가법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이 일체로 거래되는 시장현실에 있어서, 원가의 총액과 거래가액 간에는 괴리가 발생하는 등에 있어서 적용에 한계가 있음.

수익환원법은 공동주택으로 이용 중인 본건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을 추정하여 현재가치로 환원 또는 할인하는 과정에 현실적인 어려움 등에 있어서 적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서, 다른 방법의 적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기준하되,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및 평가사례 등의 참고가격 자료를 통해 시산가액의 합리성을 종합 검토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기준시점

본건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5년 07월 07일을 기준하였음.

5.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5년 06월 30일 ~ 07월 07일 등에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귀 제시목록 및 공부를 기준으로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가격자료를 수집하였음.

6. 기타 참고 사항

가. 본건의 소재지, 지번, 면적 등은 귀 제시목록 및 공부에 의거하였음.

나. 본건은 구분건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게 되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토지·건물가격의 구분평가가 곤란하나, 귀 원의 요청에 따라 대상 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한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부동산연구원의 주거용 토지·건물배분비율표에 의거하여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구분건물 감정평가평가명세표"에 기재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바람.

다. 본건의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도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폐문, 부재 등으로 인해 내부확인이 불가능하여 표준적인 설비 및 이용상황은 외부관찰 및 전례, 도면 등에 의해 작성되었으므로, 실제 이용상태 및 내부구조도는 상이할 수 있는 바 경매 진행시 참고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

1. 대상물건의 개요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5-350 (연희로37길 25-14)					
건물명 동호수	홍은드림아파트 제2층 제202호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사용승인일	2012.09.20.	지하층 /지상층	1층 /6층 (옥탑)	
구분		전유면적 (㎡)	공용면적 (㎡)	전체면적 (㎡)	대지권면적 (㎡)	용도
기호	층 /호수					
가	2층 /202호	84.90	16.10	101	52.462	공동주택 (아파트)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방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시산가액을 산출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비교사례 선정

가. 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감정평가 정보체계(KAIS)]

기호	소재지	건물명	층 /호수	전유면적 (㎡)	전유면적당 단가 (원/㎡)	거래금액 (원)	거래시점
#1	서대문구 홍은동 200-000	홍은드림 아파트	3층 /300호	84.90	5,418,139	460,000,000	2024.01.27
#2	서대문구 홍은동 200-000	홍은드림 아파트	4층 /400호	84.90	4,770,318	405,000,000	2023.01.17
#3	서대문구 홍은동 200-00	그랜드 아파트 0동	2층 /200호	58.48	4,779,412	279,500,000	2022.10.03
#4	서대문구 홍은동 200-00	그랜드 아파트 0동	5층 /500호	58.48	3,967,168	232,000,000	2024.10.15
#5	서대문구 홍은동 200-000	교수 아파트 0동	지층 /비00호	95.76	3,132,832	300,000,000	2024.08.26

나. 비교사례 선정

대상물건과 동일 지역 및 동일 건물 내에 소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거래사례 #1> 을(를) 비교사례로 선정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사정보정

기준시점 현재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정상적인 거래 사례로 판단됨. **(1.000)**

5. 시점수정

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서울 - 강북지역 - 서북권 - 서대문구)

[출처 : 한국부동산원(R-ONE)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기준일 2025년 03월 = 100)]

사례기준 매매가격지수 (23년 12월)	기준시점 매매가격지수 (25년 05월)	변동률(%)	비고
95.2	100.4		
2023년 12월 지수를 적용함.	2025년 06월 지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발표이전 이므로 2025년 05월 지수를 적용함.	5.462 (1.05462)	100.4 / 95.2

나. 시점수정치의 결정

대상물건과 유사성이 있고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변동 추이가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시점수정치로 결정함.

(1.0546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6. 가치형성요인 비교

가. 가치형성요인 비교항목

요인구분	세부항목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건물요인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 면적구성(대형,중형,소형)
	단지내 통로구조(복도식/계단식) 등
개별요인 (호별요인)	층별 효용
	향별 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나.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산정

기호	사례기호	외부요인	건물요인 (내부요인)	개별요인 (호별요인)	기타요인	누계치
가	#1	1.00	1.00	0.98	1.00	0.980
	대상물건은 비교사례보다 개별요인(층별 효용 등)에서 다소 열세함.					

7.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기호	사례 전유면적당 단가 (원/m ²)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산출단가 (원/m ²)	적용단가 (원/m ²)
가	5,418,139	1.000	1.05462	0.980	5,599,796	5,6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가격자료

1. 인근 유사부동산의 평가사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

기호	소재지	건물명	층/호수	전유면적 (㎡)	전유면적당 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평가목적
							기준시점
#A	서대문구 홍은동 200-000	홍은드림 아파트	3층 /300호	101.18	5,099,822	516,000,000	시가참고
							2024.10.15
#B	서대문구 홍은동 200-000	백련아파트	7층 /700호	88.29	4,417,261	390,000,000	경매
							2024.10.11
#C	서대문구 홍은동 200-00	넥서스빌	5층 /500호	191.31	5,749,830	1,100,000,000	시가참고
							2025.06.10

2. 경매통계자료

[출처 : 부동산태인]

통계기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낙찰가율(%)	낙찰건수	낙찰가율(%)	낙찰건수	낙찰가율(%)	낙찰건수
최근 1년 (아파트)	93.79	1,596	91.26	53	87.86	17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격수준

구분	가격수준(전유면적기준) (원/㎡)
본건 유사 아파트	5,000,000 원/㎡ ~ 6,000,000 원/㎡ 내외수준

의 견

본건 인근에 소재하는 유사 아파트의 시세수준은 대체로
상기와 같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으나, 위치·조망·층 등에
따라 가격수준의 차이를 보임.

IV. 감정평가액 결정 및 의견

1. 감정평가액 결정

구분		전유면적 (㎡)	대지권면적 (㎡)	전유면적기준 적용단가 (원/㎡)	산출가액 (원)	감정평가액 (원)
기호	층 /호수					
가	2층 /202호	84.90	52.462	5,600,000	475,440,000	475,000,000

2.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대상물건은 공동주택(아파트)으로서, 인근 유사 구분건물(아파트)의 거래사례, 평가사례, 인근 가격수준, 경매통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 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상기 금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함.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홍은드림아파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37길 25-14	265-350	공동주택 (아파트)	철근 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6층				사용승인일 2012.09.20	
					지하층	35.20			
					1층	22.00			
					2층~4층	211.08			각층 기준
					5층	191.57			
					6층	167.16			
					옥탑	27.50			
					대	545			
					제1종일반 주거지역				
					(내) 철근 콘크리트구조 제2층 제202호	84.90	84.90		비준가액 공용면적 포함평가
	52.462								
1. 소유권대지권	545x----- 545	52.462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배분내역 285,000,000 190,000,000					
합 계							₩475,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소재 "정원여자중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빌라, 공원, 공공시설, 교육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진출입이 가능하며 주위에 노선버스정류장 등 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평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6층 공동주택(아파트) 건물 내 제2층 제202호로서,
외벽 : 시멘트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및 석재붙임 마감 등
내벽 : 벽지도배 및 일부 타일 마감 등
창호 : 샷시 창호 등 임.

(4) 이용상태

공동주택(아파트)으로 이용중임.
(후첨 "내부구조도" 참조)

(5) 설비내역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으로서 주차장설비, 승강기설비, 소화전설비, 급배수설비 및 기본적인 위생설비 등 갖추었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완경사지를 평탄하게 조성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 등으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북동측으로 연희로37길과 접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도시지역(2012-08-09), 제1종일반주거지역, 도로(사도)(접함), 소로2류(폭 8m~10m)(2024-10-31)(접함),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공방어협조구역(위탁고도:77-257M)<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임.

(9) 공부와의 차이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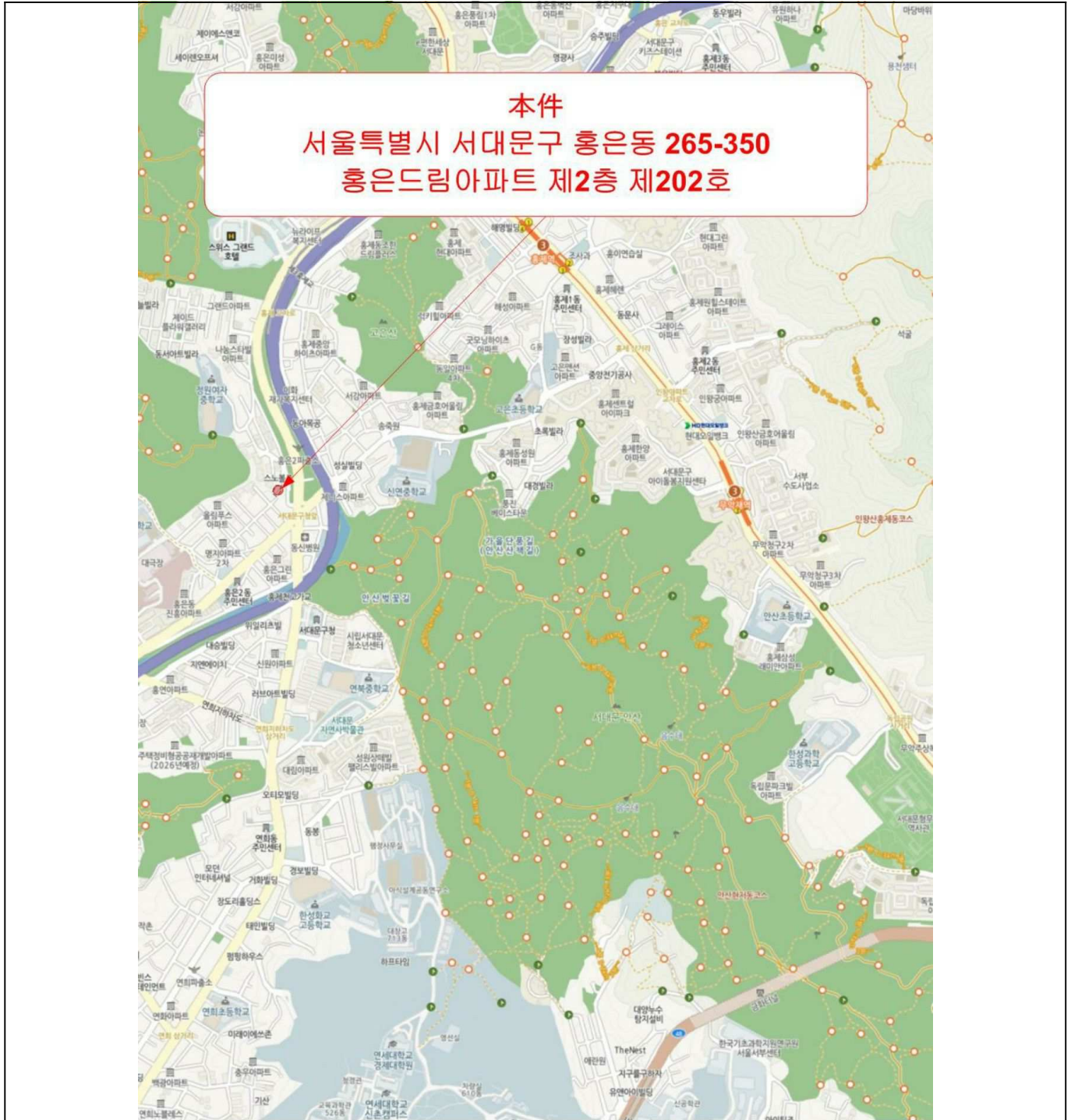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는 미상임.

광역위치도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5-350 흥은드림아파트 2층 202호
------------	--



위치도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5-350 흥은드림아파트 2층 202호
------------	--



내부구조도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5-350 홍은드림아파트 2층 202호

NO SCALE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265-350
홍은드림아파트 제2층 제202호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